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98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 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유치·매각 권한 신설 (서미화의원안)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98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률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채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채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채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제211조 및 제2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5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채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유치·매각 권한 신설 (서미화의위원안)

현 행	개정안
☐ 유치 및 예치 (제206조) ○ 유치대상 - 여행자의 휴대품 -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 유치사유 -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표시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관세 면제기준을 초과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채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채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유치사유 추가 (제206조) ○ (현행과 같음) ○ 부당이득 징수금 채납자의 수입물품 유치 가능하도록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채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채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8조) ○ 장치기간 이전 매각대상가능 물품 - 동식물, 부패가능한 물품 등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 「관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채납처분을	☐ 매각대상 추가 (제208조) ○ 부당이득 징수금 채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입물품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관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현 행	개정안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 * 외국물품 한정 ☐ 잔금처리 (제211조) ○ 매각대금 충당 순서 - 매각비용, 관세, 각종 <u>세금</u>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화주에게 교부 ☐ 국고귀속 (제212조) ○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유찰물품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 후 미이행시 국고귀속 * 관세·국세·<u>지방세</u>의 체납액 ☐ 통관의 보류 (제237조) ○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가능 - 「국세징수법」, 「<u>지방세징수법</u>」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 * 외국물품 한정 ☐ 매각대금 충당 대상 추가 (제211조) ○ 매각대금을 부당이득 징수금에도 충당하도록 추가 - 매각비용, 관세, 각종 <u>세금</u>, 「<u>국민건강보험법</u>」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화주에게 교부 ☐ 충당금 충당 대상 추가 (제212조) ○ 부당이득 징수금도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추가 -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유찰물품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 후 미이행시 국고귀속 * 관세·국세·<u>지방세</u>·<u>부당이득징수금</u>의 체납액 ☐ 통관보류 대상 추가 (제237조)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수입물품 통관보류 가능하도록 추가 - 「국세징수법」, 「<u>지방세징수법</u>」, 「<u>국민건강보험법</u>」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서미화의원안 2024. 11. 28. 발의(의안번호 5987)

☐ 개정안은 국세 및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¹⁾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한 강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징수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함으로써 「관세법」에 따른 해당 물품의 유치²⁾·예치³⁾, 매각, 잔금처리, 국고귀속 및 통관보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국세징수법」⁴⁾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⁵⁾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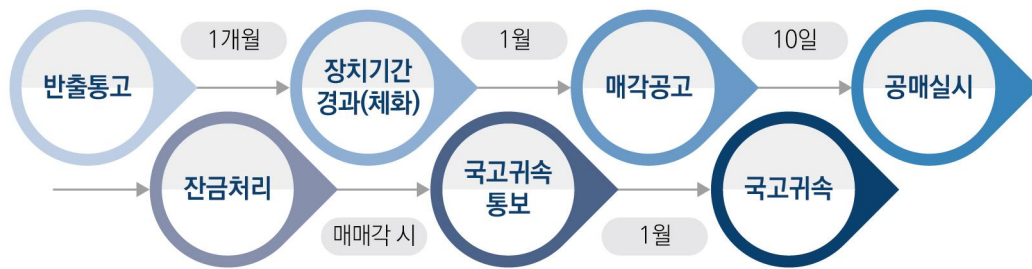
「관세법」⁶⁾은 위탁받은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권한에 따라 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수출입통관을 일시 보류하고 세관에서 관리하는 장소에 그 물품을 보관하는 것(출처: 관세인재개발원)
- 3)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을 수입통관 할 의사가 없어 그의 휴대품을 입국지 세관에 일시 보관해두는 것(출처: 관세인재개발원)
- 4) 「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

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유치·예치, 매각, 잔금처리 및 국고귀속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절차]



자료: 관세인재개발원

이는 국세 및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을 유치·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제212조(국고귀속)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예치·통관보류하고,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해당 물품을 매각하여 세금에 충당하며, 매각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게 충당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조세 정의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런데, 「의료법」 7) 및 「약사법」 8)을 위반하여 의료인 또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하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9)에 따라 불법개설 요

7)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8) 「약사법」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양기관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해 환수결정 및 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64%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최근 10년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부당이득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2024.11.30. 기준)

연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계	1,037	2,571,347	196,412	7.64
2015	165	302,719	16,813	5.55
2016	203	382,124	24,360	6.37
2017	208	445,619	19,860	4.46
2018	112	178,167	23,588	13.24
2019	104	338,485	19,704	5.82
2020	73	300,248	23,053	7.68
2021	32	35,170	16,516	46.96
2022	31	131,855	14,965	11.35
2023	55	187,320	17,653	9.42
2024	54	269,640	19,900	7.38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988,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등에 대한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이 발의되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 10) 해당 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988)은 2024년 11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1월 14일 상정됨.

동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바, 두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국민건강보험은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은 조세채권이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사인 간의 일반채권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강제징수 위탁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서 위탁하는 강제징수 권한은 각각 국세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의 강제징수 권한임에 반해, 개정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강제징수 권한은 세금의 강제징수가 아닌 부당이득의 강제징수 권한임.

세관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부당이득의 강제징수 권한을 공단으로부터 위탁받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부당이득 징수금은 조세채권이 아닌 공단과 사인 간 일반채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은 조세의 부과처분 및 통관절차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과 관련이 없으며, 과세처분 또는 통관행위와 관련 없는 사유로 국민재산(수입물품)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침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실효적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9